

의안 번호	제 2394호~ 제 2395호
----------	---------------------

2023. 7. 18.(화) 11:00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2건(개정규칙안 2) : 붙임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총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394호 :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안번호 제2395호 :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2차 운영위)
제2394호	2023. 7. 4.	장성군의회 의장 (서춘경 의원)	2023. 7. 7.	2023. 7. 14.
제2395호	2023. 7. 4.	장성군의회 의장 (차상현 의원)	2023. 7. 7.	2023. 7. 14.

III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7. 4.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서춘경 의원)
- 회부일자 : 2023. 7.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4.(제35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령(지방자치법)의 변경된 인용 조문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약칭 삭제(안 제1조)
 -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서 약칭 삭제
- 약칭 반영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 장성군의회의회장 약칭 반영
 -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법 제26조제6항→법 제32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규칙안은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정비와 상위법령의 변경된 인용 조문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7. 4.
- 제출자 : 장성군의회 의장(차상현 의원)
- 회부일자 : 2023. 7.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4.(제35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제4호, 제5호)
 - (신설) 제4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 (신설) 제5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간사 변경(안 제9조)
 - (개정 전) “의회사무과장”
 - (개정 후) “의회사무과 담당업무팀장”

-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 및 변경(안 제12조 1항)
 - (삭제)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변경) “1명”→“전원 또는 한 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의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제2396호~ 제2399호
----------	-------------------

2023. 7. 18.(화) 11:00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심사보고서

안건
총 4건(제정안 1, 개정안 1, 폐지안 1, 동의안 1) 붙임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총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396호 :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제2397호 :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의안번호 제2398호 :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399호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II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출일	제출자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제1차행차위)
제2396호	2023. 7. 4.	장성군수	2023. 7. 7.	2023. 7. 14.
제2397호	2023. 7. 5.	장성군수	2023. 7. 7.	2023. 7. 14.
제2398호	2023. 7. 5.	장성군수	2023. 7. 7.	2023. 7. 14.
제2399호	2023. 7. 5.	장성군수	2023. 7. 7.	2023. 7. 14.

III 심사결과

안건	심사결과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7. 4.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심민섭 부의장)
- 회부일자 : 2023. 7.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4.(제35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안 제6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3. 7.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4.(제35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본 조례는 2016년 열악한 단기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장기요양기관 증가 및 장기요양사업 활성화로 단기보호사업 수요가 해소되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2016년 열악한 단기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장기요양기관 증가 및 장기요양사업 활성화로 단기보호사업 수요가 해소되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출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 2023. 7.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4.(제35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의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 집단생활하는 청소년과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아울러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염병 환자 등 신고 및 보고 의무자(안 제8조)
 - (현행) 의사, 한의사 → (개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현행	개정	비고
65세 이상 군민	60~64세 군민	“65세 이상”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임
50~64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59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60~64세 군민 전체 지원
<신설>	14~18세 청소년	“6개월~13세 이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임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대상 상위법 조항으로 변경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및 그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3. 7.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4.(제35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 사업 추진 관련 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 사항이 있어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

위치변경				사유	비고
당초		변경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장성읍 영천리 1449-1번지	3,273㎡	장성읍 영천리 1464-2, 3번지	2,998㎡ (감 275㎡)	당초 건립 예정지 부지매입 불가 (소유자 매도의사 없음)	

- 직업재활시설 건물 신축 : 지상1층, 연면적 528㎡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

위치변경				사유	비고
당 초		변 경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장성읍 영천리 1449-2번지	1,947㎡	장성읍 영천리 1464-10번지	2,641㎡ (증694㎡)	당초 건립 예정지 부지매입 불가 (소유자 매도의사 없음)	

- 주간보호시설 건물 신축 : 지상1층, 연면적 500㎡

3. 공유재산 관리계획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 / 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2 필지 / 1 동		4,100,000	
취득	토지매입	2 필지	2,998	2,000,000	기 승인
	건물신축	1 동	528	2,100,000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 / 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1 필지 / 1 동		3,600,000	
취득	토지매입	1 필지	2,641	1,200,000	기 승인
	건물신축	1 동	500	2,400,0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변경동의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의 건립 부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제2400호~ 제2402호
----------	-------------------

2023. 7. 18.(화) 11:00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3건(제정조례안 3) : 붙임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총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400호 :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제2401호 :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2402호 :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II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출일	제출자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제1차 산건위)
제2400호	2023. 7. 5.	장성군수 (재난안전과장)	2023. 7. 7.	2023. 7. 17.
제2401호	2023. 7. 5.	장성군수 (재난안전과장)	2023. 7. 7.	2023. 7. 17.
제2402호	2023. 7. 5.	장성군수 (건설과장)	2023. 7. 7.	2023. 7. 17.

III 심사결과

안건	심사결과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출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장)
- 회부일자 : 2023. 7.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7.(제3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안전문화운동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안 제3조)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 ◆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 및 해당 분야 대학의 교수 혹은 전문가
 -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 ◆ 지역 공공기관, 학교 등 추천 직원 및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군민
 -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 안전보안관의 임기 (안 제4조)
 - 안전보안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안전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

○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 제5조)

-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 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안 제8조)

-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 활동 중 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안전문화운동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제3조 제1항(위촉 등) 중 안전보안관의 위촉인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

6. 수정안의 요지

- 제3조 제1항(위촉 등) 각 호외의 부분 중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를 “사람으로 40인 이내의 안전보안관을” 로 수정
- 붙임 수정조문표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위촉 등) ①항 중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를 “사람으로 40인 이내의 안전보안관을” 로 수정.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촉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에 주민 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u>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u>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제3조(위촉 등) ① ----- ----- ----- ----- ----- <u>사람으로</u> <u>40인 이내의 안전보안관을</u> -----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출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장)
- 회부일자 : 2023. 7.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7.(제3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풍수해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함.
-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안 제6조)
 -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곤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매년 수립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에 따른다.

○ **홍보 등(안 제7조)**

- 풍수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3. 7. 5.
- 제출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회부일자 : 2023. 7. 7.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7.(제3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과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농촌협약 조건(안 제8조)
 - 협약을 담당하는 “농촌협약위원회”, “전담조직(부서)”, “중간지원조직”,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
-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자문·심의
 -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자문

○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안 제15조)

-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 :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조직

○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구성(안 제16조)

-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 등

○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운영 등(안 제17조)

-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안 제23조)

-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과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